

2008. 7. 21(월) 10:00



150회 거창군의회(정례회)  
제 2 차 본 회 의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

심 사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## 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.... 2
2.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.... 8
3.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..... 11

#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8. 06. 30.
- 제출자 : 거창군수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. 07. 15(제2차 총무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8 - 27호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실용조직 기조에 따라 유사기능 및 세분화된 기구를 통폐합 및 조정하여 기능중심의 행정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군 본청의 실과단의 직제순 변경 및 실과통합, 명칭변경 (안 제3조).
  - 기획감사실, 종합민원실, 행정과, 재무과, 경제과, 주민생활지원과
- ⇒ 기획감사실, 주민생활지원과, 행정과, 재무과, 민원봉사과, 경제과

- 주민생활지원과 + 사회복지과 ⇒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
- 종합민원실 ⇒ 민원봉사과로 명칭변경
- 재난안전관리과 ⇒ 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
- 전략사업추진단 ⇒ 1010추진단으로 명칭변경
- 한시기구 만료 및 업무추가 (안 제3조).
  - 혁신분권업무(행정과) ⇒ 삭제
  -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업무(1010추진단) ⇒ 추가
  - 기업유치 업무(1010추진단) ⇒ 추가
-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번호 변경(안 제5조제1항).
 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1조 ⇒ 제16조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거창군의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하여 1과를 감축하는 것과,
- 과·실·단 명칭 변경과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명칭변경은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,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, 전략사업추진단을 1010추진단으로 하고, 업무 추가는 전략사업추진단에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업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분장하는 것임.
- 그런데 과·실·단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표

기된 명칭도 함께 변경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에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음.

그래서 이 개정 조례안에서 과·실·단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표기된 명칭도 변경될 수 있도록 붙임 내용과 같이 부칙 조항을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 실·과·단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에 표기된 명칭도 변경함

※ 붙임 : 수정조문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#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 례 안	수 정 안	수정의견
제1조(시행일)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1조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 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종합민원실”을 “민원봉사과”로 하며, “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”를 “주민생활지원과”로 하고, “전략사업추진단”을 “1010추진단”으로 한다.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“재난안전관리과”를 “재난관리과”로 한다  ② 「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3항제1호 중 “종합민원실장”을 “민원봉사과장”으로 한다.  ③ 「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항 중 “종합민원실장”을 “민원봉사과장”으로 한다.  ④ 「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3항제1호 중 “종합민원실장”을 “민원봉사과장”으로 하고, 제12조제1항 중 “종합민원실장”을 “민원봉사과장”으로 한다.  ⑤ 「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3항 본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, 사	○ 과·실·단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조례에 표기된 명칭도 변경 수정함이 타당함

	<p>회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한다.</p> <p>⑥ 「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 중 “종합민원실장”을 “민원봉사과장”으로 한다.</p> <p>⑦ 「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4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·사회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 장”으로 한다.</p> <p>⑧ 「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제1호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한다.</p> <p>⑨ 「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·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한다.</p> <p>⑩ 「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2항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한다.</p> <p>⑪ 「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제9호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. 제2조제1항제13호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을</p>	
--	--	--

	<p>“재난관리과장”으로 한다.</p> <p>⑫ 「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3항제1호 중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을 “재난관리과장”으로 한다.</p> <p>⑬ 「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0조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하고, 제15조 중 “전략사업추진단장”을 “1010추진단장”으로 하며, 제20조제4호 중 “종합민원실”을 “민원봉사과”로 한다.</p> <p>제20조제6호 및 제7호 중 “전략사업추진단장”을 각각 “1010추진단장”으로 한다.</p> <p>⑭ 「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7조제5항 중 “전략사업추진단장”을 “1010추진단장”으로 한다.</p>	
<p>수정의견 사유 : 과·실·단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조례에 표기된 명칭도 변경</p>		

#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8. 06. 30.
- 제출자 : 거창군수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. 07. 15(제2차 총무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8 - 28호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유사기구 통폐합 및 조정으로 기능중심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종류별 정원 감원(안 별표) : 678명 → 650명(△28명)
  - 일반직 감원 : 4급 1명, 6급 3명, 7급 5명, 8급 4명, 9급 4명
  - 지도직 감원 : 4명
  - 기능직 감원 : 6급 1명, 7급 1명, 9급 1명, 10급 3명
  - 별정직 감원 : 6 ~ 7급 1명(16명 → 15명)
- 기관별 정원 변동(안 별표)
  - 본청 : 269명 → 275명(증6명)

- 의회 : 14명 → 14명(변동 없음)
- 농업기술센터 : 61명 → 57명(△4명)
- 보건소 : 72명 → 66명(△ 6명)
- 사업소 : 59명 → 50명(△ 9명)
- 읍 : 45명 → 41명(△ 4명)
- 면 : 158명 → 147명(△11명)
-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조정 : 4급 → 5급
- 한시정원 삭제(안 부칙 제2항)
  - 혁신분권업무 : 3명(6급1명, 7급1명, 8급1명)
  - 복식부기업무 : 2명(6급1명, 8급1명)
  - 일제강점하피해조사업무 : 1명(7급1명)
- 별표 :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조직은 통폐합하고 작고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총 정원 678명에서 2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서
-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8. 07. 07.
- 제출자 : 강창남 의원 외 1명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. 07. 15(제2차 총무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8 - 30호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제정이유

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바,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·부부교육·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는 등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수립(안 제3조부터 안 제12조까지).
  -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,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
-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을 규정함(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)
  - 기본소양교육, 자활지원,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등
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0조 부터 제23조까지)
  - 군수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
  -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·상담, 기관단체와 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사업 지원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우리지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.
-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  - 안 제2조에서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뜻을 말하고,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·구성에 대한 것으로,
  - 안 제13조부터 19조까지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으로 기본 소양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, 생활지원,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, 아동의 보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

-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『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』 라고 규정하고 있음.
- 이 조례안의 내용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그러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6조에서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기준, 지정기간,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,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5조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인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」이 아직 제정 공포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향후 상위법 제정 여부에 따라 조례가 재개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